

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이영실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 외 28명이 공동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이관 및 개정된 가로수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, 또한 가로수 심의 위원회 관련 조례 제명을 올바르게 수정하는 등 시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가로수의 정의를 상의법에 부합하게 개정(안 제3조)하고, 가

로수 심의위원회 규정과 관련한 조례 제명을 수정반영(안 제7조의 2)하였습니다. 이 밖에 법제처의 ‘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.

-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